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530호

자동차 검사 과태료(사전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감경부과 및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16. ~ 2026. 11. 30.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감경부과 및 통합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사항
   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2)

2026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장의인